

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	통보국가: <u>칠레</u> 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2.	담당기관: 에너지부 통보에 관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이 위와 다른 경우, 해당 기관의 이름 및 주소(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이메일 및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 포함)를 명시해야 한다: 국제경제관계차관실(SUBREI) – 칠레 외교부
3.	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[], 제 7.2 [], 기타:
4.	해당 제품(해당되는 경우 HS 또는 CCCN, 이와 다른 경우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불꽃 점화 엔진용 휘발유, A-1 등급 디젤, B-1 등급 디젤, B-2 등급 디젤, 등유, 연료유 5 호 및 연료유 6 호
5.	통보된 문서의 제목, 페이지 수 및 언어: 연료 품질 규격 규정 및 2011 년 에너지부 최고령 제 60 호 폐지 (9 페이지, 스페인어)
6.	내용: 전술한 연료 품질 규격을 규정한다.
7.	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환경 보호
8.	관련 문서: 1978 년 에너지부 법령 제 2224 호 1978 년 법률 효력을 갖는 광업부 법령 제 1 호 1979 년 광업부 최고령 제 132 호 2011 년 에너지부 최고령 제 60 호

9. 채택 예정일: -

시행 예정일: -
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30 일

11. 관련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]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, 해당 주소,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:

국제경제관계차관실

칠레 외교부

주소: Teatinos 180, piso 11

전화: (+56)-2- 2827 5250

이메일: tbt_chile@subrei.gob.cl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CHL/24_01557_00_s.pdf